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14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유영하·성일종·권성동

박정하 · 김승수 · 김정재

이종배 · 서천호 · 김석기

김상욱 · 김은혜 · 김기웅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 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 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 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한정한다)"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 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3.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u>에 한정한다)</u>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4.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있는 자	<u>에 한정한다)</u>

5. ~ 10. (생략)

- ③ (생략)
-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신 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만, 제1항제1호 또</u>
는 제2호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
<u>다.</u>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의 자격) ①

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 1. ~ 3. (생략)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 제8 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 의 자격)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 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 지 못한다.

- 1. ~ 3. (생 략)
-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1. ~ 3. (현행과 같음)	
4. <u>이 법, 「금융소비자 보</u>	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
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4.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u>에 한정한다)</u>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